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155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 증가하였고, '22년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출액 27,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함.

나.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 136,276백만원 반영에 따라, 예치금이 42,587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책사업(재무활동) 지출계획은 당초 대비 37.8% 변경되었음.

- 이차보전금 : 108,776백만원 → 136,276백만원 (증 27,500백만원)
- 예치금 : 70,087백만원 → 42,587백만원 (감 27,500백만원)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83,743	383,743	-
중소기업 금융지원	310,901	338,401	27,500(8.8%)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08,776	136,276	27,500
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재무활동	72,837	45,337	△27,500(△3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50	2,750	-
예치금	70,087	42,587	△27,500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2133-5190)